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input type="checkbox"/> 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 제외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소득세법의 비과세 대상 급여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출산 전·후 휴가기간, 육아휴직 기간 급여 등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비수도권(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) 소재 중소기업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장기근속수당

□ 개정내용

- 비수도권(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* 포함) 소재 중소기업이 3년 이상 계속
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'장기근속수당'*을 과세표준에서 공제
- (공제 한도) 종업원의 월 급여액의 10% (최대 36만원限)

* (인천 2) 강화군, 옹진군 (경기 2) 가평군, 연천군

** 법정근로수당은 아니며 취업규칙, 단체협약, 근로계약서 등에 포함될 경우 지급

※ (예시) ① (A기업) 5년차 종업원(월 급여액 300만원)에게 장기근속수당을 40만원 지급 시
→ 30만원* 공제

$$* \text{Min}(\text{Min}(300\text{만원} \times 10\%) = 30\text{만원}, 40\text{만원}), 36\text{만원}) = 30\text{만원}$$

② (B기업) 3년차 종업원(월 급여액 200만원)에게 장기근속수당을 15만원 지급 시
→ 15만원* 공제

$$* \text{Min}(\text{Min}(200\text{만원} \times 10\%) = 20\text{만원}, 15\text{만원}), 36\text{만원}) = 15\text{만원}$$

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적용

|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